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9고단17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업무방해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1741 가. 공무집행방해

나. 모욕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김지영(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장선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16.

###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벌금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 00: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F을 따라 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피고인 A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01:35경 제1항 'E' 주점 앞에서, 위 종업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 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개새끼들아, 200도 못 버는 새끼들이, 니 애미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약 10분 동안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3. 01:50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G지구대에서, 민원인 K과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등  $5\sim6$ 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에게'병신 같은 보지년', 피쳐 싸는 것 밖에 안 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H, K,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고(피고인 B),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2]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지구대에 인치되고 나서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안으로서(피고인 A)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모욕을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 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피고인 B)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파사 안재천

#### 미주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 9660 판결 참조).